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1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10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공사

피 고 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 [redacted]시장

3.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6. 3. 2.

판 결 선 고 2016. 3. 17.

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4. 9. 3. 한 재산세 7,995,810원의 부과처분 중 7,678,7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피고 [redacted]시장이 2014. 9. 4. 한 재산세 2,464,830원의 부과처분 중 2,367,0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다. 피고 [redacted]시장이 2014. 9. 2. 한 재산세 1,171,820원의 부과처분 중 1,125,3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1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를 받아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2014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현재 주요주주는 [redacted](26.15%), [redacted]공사(20.47%), [redacted] 단체(합계 7.93%)[1] 등이다.

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구 [redacted]시 시세 감면조례(2012. 5. 14. [redacted]시 조례 제2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라, 피고 [redacted]시장은 구 [redacted]시 시세 감면조례(2012. 5. 9. [redacted]시 조례 제1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피고 [redacted]시장은 구 [redacted]시세 감면조례(2012. 7. 9. [redacted]시 조례 제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3개의 조례를 통틀어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1) [redacted]시 3.34%, [redacted]도 1.02%, [redacted]광역시 0.57%, [redacted]광역시 0.55%, [redacted]도 0.49%, [redacted]광역시 0.35%, [redacted]도 0.34%, [redacted]광역시 0.32%, [redacted]광역시 0.28%, [redacted]북도 0.26%, [redacted]도 [redacted]시 0.22%, [redacted]도 0.16%, [redacted]도 0.0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1

다. 피고들은 원고가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어 2014.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9.경 각 관할구역 소재 건축물(업무용 건물 및 가스관, 수도배관 등 구축물)에 대하여 감면 없이 2014년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각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2. 16. 조세심판원은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가 1, 2호증, 을나 1 내지 4호증, 을다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자치단체는 구 한국가스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의하여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원고에 대한 자본금 납입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관련부처 협의 지체로 실제 납입이 지연되었을 뿐인 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다는 것을 반드시 설립 시 최초자본금 납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한다.

2)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에 의하면 원고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나 공사로서의 공익성 유지의 필요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법 등에서 정한 규정을 추가로 적용받을 뿐인 점, 원고의 경우 주식 거래가 자유롭고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며 각 주주는 지분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1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라고 규정한 것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과 대비하기 위한 표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각 처분 중 주문기재와 같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전체 세액에 감면비율인 50%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 7.93%를 곱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감면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 12. 31.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한국가스공사법 제4조는 원고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하고, 위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조는 주식의 종류, 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1

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구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1986. 10. 6. 대통령령 제1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내지 5조는 원고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천만 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1만 원으로 하며, 원고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만 주 이상으로 하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인수할 주식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며, 서울특별시가 인수할 주식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인수할 주식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1986. 10. 6. 개정된 구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1991. 7. 1. 대통령령 제13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과 각각 협의를 거쳐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갑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이 설립 당시 예정된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은 이 사건 감면조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각 조례나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취지는 그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1

②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등 대부분의 업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구 한국가스공사법 제1조, 제21조, 제31조 등 참조).

③ 원고를 설립하기 위하여 구 한국가스공사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원고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하되, 위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도록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원고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④ 원고가 [redacted]와 [redacted]공사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으로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치고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준비 중이던 1986년경 [redacted]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장관회의 및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원고의 지분 3.12%를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원고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고, 2014. 6. 1.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의 지분 7.93%를 보유하고 있다.

⑤ 당초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후 설립등기를 하였는지, 그 전에 설립등기를 하였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여부에 차별을 둘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개정이유에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규정인 제85조의2를 신설하는 이유에 대하여 '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및 지방공단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1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감면 수준인 100%의 범위에서 2013. 12. 31.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지방공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감면 수준을 법정화하되 현행 100%에서 75%로 축소함'이라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 당시 기존 조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정화하면서 감면비율만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⑦ 관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충족하도록 규정한 자본금을 갖추어 설립한 후 설립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법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한 법인과 달리 규율할 필요성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 국민 편익을 위해 추진하는 법인 설립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이후로 미뤄야 한다면 이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

2) 원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특별법인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 및 운영상 다소 특수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 소정의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있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②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 제3항은 원고에 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1

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법인의 주권이 상장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이 법적 성격 및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이 요구되는바, 원고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④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 2항은 지방세 감면대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세 감면대상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뿐만 아니라 상법상 주식회사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하였다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상법상 주식회사보다 공익성이 더 강하면서도 상법상 주식회사 규정이 적용되는 공사에 대하여, 그 명칭이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정당한 세액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지방세 경감대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바, 이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비율(7.93%)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재산세는 아래 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금액단위: 원)

처분청(피고)	과세대상	부과금액(A)	경감액(B)(= A×0.50×7.93%)	정당한 세액 (=A-B)
[redacted]시 [redacted] 구청장	[redacted]	7,995,810	317,040	7,678,77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1

[redacted]시장	[redacted]	2,464,830	97,740	2,367,090
[redacted]시장	[redacted]	1,171,820	46,470	1,125,350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창현

판사 한진희

판사 최정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1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1

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 이 조에서 "출자·출연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가. 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한 주식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수의 비율
 나. 출연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총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산(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연한 재산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의 비율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구 한국가스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1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출자는 현금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공급과 그 부산물의 정제·판매
2.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
3. 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4.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행한다.

제31조(토지등의 수용·사용)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이 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며, 그 적용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 한국가스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제11조(사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1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천연가스[액화(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공급과 그 부산물(부산물)의 정제·판매
2. 천연가스의 인수기지(인수기지)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
3. 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4.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국제 석유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외의 석유자원의 탐사·개발 사업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공사에 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1986. 10. 6. 대통령령 제1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천만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제4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공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만주이상으로 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시기 및 주금의 납입액등)

① 국가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② 서울특별시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 한국전력공사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④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경우의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1

■ 구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1991. 7. 1. 대통령령 제13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주식의 발행시기 및 주금의 납입액등)

①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과 각각 협의를 거쳐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② 한국전력공사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경우의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구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2012. 5. 14. 전주시 조례 제2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구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2012. 5. 9. 익산시 조례 제1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②「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 구 김제시 시세 감면조례(201. 7. 9. 김제시 조례 제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②「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1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끝.